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(이종배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6539

발의연월일: 2020. 12. 16.

발 의 자:이종배·윤한홍·김상훈

김석기 · 김영식 · 조수진

윤두현 · 장제원 · 조태용

곽상도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 따르면, 지방병무청장은 병역의무자가 국외를 왕래하는 선박의 선원, 국외에 체재하거나 거주하고 있는 사람 또는 범죄로 인하여 구속되거나 형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인 경우에 한정하여 병역판정검사 또는 입영 등을 연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러나 최근의 사례에서 보듯이 입대를 앞두고 범죄행위로 인하여 검찰이나 경찰이 수사를 진행 중인 사람에 대하여는 해당 사유를 이 유로 병역의무의 이행을 연기시킬 수 없는 상황임.

이에 지방병무청장이 병역판정검사 및 입영 등을 연기할 수 있는 사유에 수사기관에서 범죄행위를 수사 중인 사람을 추가하려는 것임 (안 제60조제1항제4호 신설). 법률 제 호

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

병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0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2항 각 호외의 부분 중 "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"를 "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"로 한다.

4. 검찰·경찰,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범죄행위를 수사 중인 사람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60조(병역판정검사 및 입영 등	제60조(병역판정검사 및 입영 등
의 연기) ① 지방병무청장은	의 연기) ①
병역판정검사 또는 재병역판정	
검사 대상자로서 다음 각 호의	
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	
대하여는 병역판정검사 또는	
재병역판정검사를 연기할 수	
있다.	
1. ~ 3. (생 략)	1. ~ 3.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4. 검찰·경찰, 그 밖의 수사기
	관에서 범죄행위를 수사 중인
	<u>사람</u>
② 지방병무청장은 병역판정검	②
사 또는 재병역판정검사를 받	
은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	
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	
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	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
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징	
집이나 소집을 연기할 수 있다.	
1. ~ 3. (생 략)	1. ~ 3. (현행과 같음)
③ ~ ⑤ (생 략)	③ ~ ⑤ (현행과 같음)